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06,859,000	36,205,770
일반회계	1,070,219,000	32,106,570
특별회계	136,640,000	4,099,200
공기업특별회계	116,014,000	3,480,420
상수도사업	45,695,000	1,370,850
하수도사업	70,319,000	2,109,570
기타특별회계	20,626,000	618,78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314,000	99,4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911,000	57,33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379,000	41,370
주택사업	371,000	11,130
주차장설치사업	447,000	13,41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674,000	20,22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837,000	25,110
의료급여기금사업	2,088,000	62,640
공공급식지원센터	9,605,000	288,15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898,002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